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3. 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원안 회부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7. 3. 14) 상정 · 수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가. 제안이유

-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교통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20일이하 점용하는 특별시도로써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및 전력·통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함 (안 제3조).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공사기간, 공사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등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4).

-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8조).
-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안 제9조).
-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 함 (안 제12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5. 討 論 要 旨

- 김성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 수정이유

- 안 제3조중 제4호에서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區道)와 그 점용기간이(…생략) 20일 이하의 특별시도(特別市道)를 대상으로 하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사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제4호에서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안 제8조제2항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위원장이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게 있다 할 것으로 동 조문을 전문개정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음.

○ 수정안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제4호의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을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안 제9조의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생략) 1.~3. (생략) 4. <u>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u>	제3조(적용대상) (생략) 1.~3. (원안과 같음) 4. <u>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u>
제8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① (생략) ②자문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u>심의·의결한다.</u> ③~⑥(생략)	제8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① (원안과 같음) ②----- ----- <u>심의한다.</u> ③~⑥(원안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협조)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호 중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심의 ·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